

고 시

●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-975호

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취소(대구연호 A-3BL)

국토교통부고시 제2021-1356호(2021.12.17.)로 승인 고시된 대구연호 A-3BL 공공주택(행복주택 630호) 사업계획에 대하여 『공공주택 특별법』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승인 취소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4년 1월 3일
국 토 교 통 부 장 관

- 1. 사 업 명 : 대구연호 A-3BL 공공주택 건설사업(행복주택 630호)
- 2. 사업시행자
 -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: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한 준
 - 주 소 :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(충무공동)
- 3. 사업시행지역 : 대구연호공공주택지구 내 A-3BL(대구광역시 수성구 연호동 이천동 일원)
- 4.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
 - 가.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: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취소
 - 나. 사 유 : 「공공주택 특별법」 제55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사정변경 [지구계획 및 사업유형변경
신혼희망타운 → 공공분양, 공공임대]으로 지속적인 주택건설사업 시행 불가